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51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 박상혁 · 김현정 · 노종면

최기상 · 김병기 · 김한규

이기헌 • 조승래 • 강준현

김남희 • 박성준 • 정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보관"을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보관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상자산의 <u>보관</u>) ① ~ ④	제7조(가상자산의 <u>보관 등</u>) ①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
	관하는 가상자산을 상계·압류
	(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
	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
	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외에는 보관한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